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95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법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근거를 추가하고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증대하며 향노화힐링특구에 옥외광고물등 표시 특례를 정하여 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신설함(안 제5조의2·별표 1)

1) 행정안전부 협의 내용

(가) 위치: 가조면 일부리 1307

(나) 종류: 지주 이용 간판 1개

(다) 규격: 10미터×5미터×10미터

2) 향노화힐링특구에서 표시가능 광고물등은 지주 이용 간판으로 한정

3) 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

나.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근거 신설(안 제19조)

다.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및 반환사유 명시함(안 제26조)

라. 법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안 별표 7)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옥외광고물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제10조의2·제10조의4·제20조

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6. 15.~7. 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8조, 별표 3)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함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군수는 법 제3조 및 제4조에 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지주 이용 간판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설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와 면적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

나. 한 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

가.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

나.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

다.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

3. 네온류, 전광류 또는 점멸하는 방법의 조명을 사용하여서는 안됨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한 결과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계시대의 관리위탁)** 군수는 영 제20조에 따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중 “별표 1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제25조제2항”을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때에는 제25조제5항”을 “경우에는 제24조제5항”으로 하면 같은 조 제6항 중 “제제25조제2항제3호”를 “제24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4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5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6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군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 중 “별표 6”을 “별표 7”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3(중전 별표 2) 중 그 밖의 교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 류	교육 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그 밖의 교육	따로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공고함		<u>성인지 감수성</u> <u>항상 교육 포함</u>

별표 7(중전 별표 6)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이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주민협의회 운영) ① (생략)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5. (생략)

③ (생략)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5조, 제5조의2,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25조, 제26조 및 별표 2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5. (생략)

#### <신 설>

제22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⑥ (생략)

제25조(교육의 위탁)

제8조(주민협의회 운영) ① (생략)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2.~5. (생략)

③ (생략)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5조, 제5조의2,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25조, 제26조 및 별표 3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5. (현행과 같음)

제19조(현수막 지정계시대의 관리위탁) 군수는 영 제20조에 따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⑥ (현행과 같음)

제25조(교육의 위탁)

①~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5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4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⑧ (현행과 같음)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4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5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6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③·④ (생략)	<p><u>한정한다.</u></p> <p>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u>별표 7</u>과 같다.</p>
<p>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u>별표 6</u>과 같다.</p>	

[별표 1]

향노화힐링특구 광고물등 표시 기준(제5조의2제3항 관련)

광고물등	개수 (면수)	규격 (가로×세로×높이)	주소	이격거리
지주 이용 간판	1 (2)	10미터×5미터×10미터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307	640미터

